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상속공제 확대(김은혜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임광현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권성동의원안, 송언석의원안)	3
2.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허용 범위 및 증여세액 공제 예외 사유 정비(김은혜의원안, 임광현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권성동의원안, 송언석의원안)	17
3.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물가연동제 도입(김은혜 의원안)	20
4. 증여재산 공제 확대(김은혜의원안, 최은석의원안)	23

I. 개요

1.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은혜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6.
- (3) 회 부 일 : 2024. 7. 17.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안 제25조 및 제55조).

다.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

라.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속공제 확대(김은혜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임광현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권성동의원안, 송언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초공제(제18조) ○ <u>2억원</u> 공제 ☐ 배우자공제(제19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공제 ○ 최대한도: Min(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u>30억원</u>) ○ 최소한도: <u>5억원</u>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더라도 공제 ☐ 기타 인적공제(제20조) ○ 자녀공제: 1인당 <u>5,000만원</u> ○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 잔여연수 ○ 연로자(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제21조) ○ 공제액: Max [<u>5억원</u> ,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 기초공제 확대 ○ <u>5억원</u> 공제(김은혜의원안) ☐ 배우자공제 확대 ○ (현행과 같음) ○ 최대한도: Min(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u>60억원</u> (<u>최은석의원안</u>)) ○ 최소한도: <u>7.5억(안도걸의원안)</u> <u>10억원(임광현·송언석의원안)</u> <u>12억원(권성동의원안)</u> <u>20억원(최은석의원안)</u>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더라도 공제 ☐ 기타 인적공제 확대 ○ 자녀공제: 1인당 <u>5억원(정부안)</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괄공제금액 상향 ○ 공제액: Max [<u>7.5억(안도걸의원안)</u> , <u>8억원(임광현의원안)</u> , <u>10억원(김은혜·권성동·송언석의원안)</u> ,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 김은혜의원안 2024. 7. 16. 발의(의안번호 1775), 최은석의원안 2024. 8. 21. 발의(의안번호 3027), 임광현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99), 안도걸의원안 2024. 8. 23. 발의(의안번호 3143),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권성동의원안 2024. 9. 23. 발의(의안번호 4177), 송언석의원안 2024. 9. 24. 발의(의안번호 4210)

□ 7건의 개정안은 기초공제 금액, 일괄공제 금액,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상속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은혜의원안은 기초공제 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안이고,

최은석의원안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최대한도는 현행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며,

임광현의원안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는 10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은 8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고,

안도걸의원안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와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며,

정부안은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고,

권성동의원안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는 12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고,

송언석의원안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와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1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안임.

구분	현행 공제금액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최대 Min(30억,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일괄공제	Max(5억원 ,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개정안
5억원(김은혜의원안)
최소 7.5억(안도걸의원안), 10억원(임광현·송언석의원안) 12억원(권성동의원안) 20억원(최은석의원안)
최대 Min(60억원(최은석의원안)
자녀: 1인당 5억원(정부안)
Max(7.5억(안도걸의원안) 8억(임광현의원안) 10억원(김은혜·권성동·송언석의원안))

□ 현행법 제18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한 모든 상속에 대하여 2억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를 두고, 제19조에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제20조에서 배우자가 아닌 자의 인적공제(이하 “기타 인적공제”라 한다)를 규정하며, 제21조는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 결정방식으로서 일괄공제금액과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거나 없더라도 최소한 5억원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대하여 5천만원씩 공제하는 자녀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¹⁾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공제하는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기대여명(期待餘命)²⁾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장애인공제를 두고 있음.

1)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을 말함.

2) “기대여명(期待餘命)”은 특정연도에 특정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함(통계청 통계표준용어)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 개요]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	2억원 (비거주자에게도 적용)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더라도 5억원 공제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 잔여연수 연로자(65세 이상)공제: 5,000만원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통계청고시)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미만 시 5억원 일괄공제

□ 인적공제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6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30억원) 금액은 개정이 없었음.

기타 인적공제는 공제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성년 기준의 변경 및 장애인 기대여명의 합리화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개정된 바 있음.

2015년 세법개정 시 자녀 인적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인적공제액은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간 5백만원씩 공제에서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간 1천만원씩 인상되었음. 연로자 공제액은 연로자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되 공제액은 노인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은 통계표에 따른 기대여명까지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되었음.

[인적공제 기준 및 금액 변경 연혁]

구 분			1996년 이전	1997~2010년	2011~2015	2016~현재
기초공제			1억원	2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	5억~30억원		
기 타 인 적 공 제	자녀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미 성 년 자	성년기준	20세			19세
		연간 공제금액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연 로 자	연로자 기준	남 60세 여 55세	60세		65세
		공제액	3천만원			5천만원
	장 애 인	기대여명 기준	75세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간 공제금액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일괄공제			-	5억원		

자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음.

첫째, 물가상승을 고려한 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음.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최소한도 금액의 경우 1997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인상하려는 개정안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 변동,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상증세법이 전면 개정되었던 1997년 당시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1997년 물가지수는 57, 2023년 물가지수는 111.6으로서, 물가가 95.8% 상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97년의 5억 원은 2023년 기준 약 9.8억원의 가치가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1997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소비자 물가지수	56.977	63.151	74.413	86.373	94.861	100	111.59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주택 매매가격지수]

구분	1997.1	2000.1	2005.1	2010.1	2015.1	2021.6	2023.1	2024.7
종합주택	50.1	46.0	60.8	76.4	84.9	100.0	98.2	95.9
아파트	37.0	35.8	55.2	70.8	82.3	100.0	96.1	93.0

*종합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둘째, 이와 같은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원과 과세대상 비율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 될 수 있으므로, 면세점 역할을 하는 상속공제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임³⁾.

1997년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2,805명이었는데, 2023년 19,944명으로 7.1배 증가하였고, 전체 피상속인 대비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비율도 1997년 1%에서 2023년 6.8%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

연도	1997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전체 피상속인	270,144	211,619	227,004	325,045	324,349	351,648	292,545
과세대상	2,805	1,389	1,816	4,547	6,592	10,181	19,944
과세미달	267,339	210,230	225,188	320,498	317,757	341,467	272,601
과세비율(%)	1.0	0.7	0.8	1.4	2.0	2.9	6.8

자료: 국세통계연보

셋째,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수준이 높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상속세 부담은 2022년 기준 0.7%로 OECD 평균 0.2%에 비해 0.5%p 높고, G7 국가 평균 0.3%에 비해서도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3) 동아일보, "상속세 대상 9배로 급증, 과세기준은 23년째 그대로... 개편 시급" (2023. 11. 15.)
 중앙일보, "상속세, 중산층도 납 일 아니다...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 (2024. 4. 20.)
 mbc뉴스 "최상목,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단순 부자 감세 아냐" (2024. 7. 25.)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도 2022년 기준 2.1%로 OECD 평균 0.4%에 비해서는 1.7%p 높고, G7 국가 평균 0.6%에 비해서도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명목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차이 (2022-2013)
한국		0.3	0.4	0.4	0.5	0.7	0.7	0.4
OECD 평균		0.1	0.1	0.1	0.1	0.1	0.2	0.1
G7	G7 평균	0.2	0.2	0.2	0.2	0.3	0.3	0.1
	캐나다	0.0	0.0	0.0	0.0	0.0	0.0	0.0
	프랑스	0.5	0.6	0.6	0.6	0.7	0.7	0.2
	독일	0.2	0.2	0.2	0.3	0.3	0.2	0.1
	이탈리아	0.0	0.0	0.0	0.0	0.0	0.1	0.1
	일본	0.3	0.4	0.4	0.4	0.5	0.5	0.2
	영국	0.2	0.2	0.2	0.2	0.3	0.3	0.1
	미국	0.2	0.1	0.1	0.1	0.1	0.2	0.0

주: 2022년 OECD 평균은 호주와 그리스를 제외한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차이 (2022-2013)
한국		1.2	1.5	1.6	1.9	2.4	2.1	0.9
OECD 평균		0.3	0.3	0.4	0.4	0.4	0.4	0.1
G7	G7 평균	0.3	0.7	0.6	0.7	0.8	0.6	0.0
	캐나다	0.0	0.0	0.0	0.0	0.1	0.1	0.0
	프랑스	1.1	1.3	1.4	1.4	1.6	1.5	0.4
	독일	0.4	0.5	0.5	0.7	0.7	0.6	0.2
	이탈리아	0.1	0.1	0.1	0.1	0.1	0.1	0.0
	일본	1.1	1.3	1.3	1.3	1.5	-	0.4
	영국	0.6	0.8	0.7	0.8	0.8	0.8	0.2
	미국	0.6	0.5	0.4	0.5	0.6	0.6	0.0

주: 1. 2022년 OECD 평균은 호주, 그리스 및 일본을 제외한 평균이며, G7 평균은 일본을 제외한 평균임
2. 일본은 2021년과 2013년 차이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거에 비하여 상속세 과세인원이나 과세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상속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에게 보다 큰 감면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령,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의 경우 10억원의 상속공제 확대 효과는 5억원 수준의 세액감면 효과가 있는 반면, 10%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최대 1억원까지만 세액감면 효과가 있음.

셋째, 부를 자녀세대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을 고려할 수 있는데,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세제상 유리한 점이 적어진 증여가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늦추고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저해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상속공제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제방식(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과 공제금액 수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첫째,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는 그 합계액이 일괄공제금액(5억원)보다 높을 때 적용되므로, 인적공제의 선택기준인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금액’의 형평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괄공제 금액 상향 수준에 맞게 기초공제도 일정 부분 상향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현재에도 미성년자나 연로자, 장애인 공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7명이 있어야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액(5.5억원)이 일괄공제액(5억원)보다 커져 기타 인적공제가 활용될 수 있는데, 일괄공제 금액만 상향되면 기타 인적공제의 활용도가 현재보다 더 감소하여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

한편, 기초공제는 다른 상속공제 제도와는 달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⁴⁾되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거주자, 비거주자 결정 비율(2023년)]

(단위: 건, 억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피상속인 수	19,888	56
총상속재산가액	516,123	1,125
총결정세액	122,371	426

자료: 국세청

4) 비거주자는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2억원)만 적용받음.

둘째, 배우자공제의 최소한도(법 제19조제4항⁵⁾에 따른 공제를 말함)는 피상속인의 사후 남아있는 배우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받는 상속가액과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면세점을 추가로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한편, 배우자공제 최고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배우자 간 부의 이전은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아니므로 해당 상속재산은 추후 자녀 세대로 이전 시 과세될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유로 OECD의 많은 국가들이 배우자의 상속세 전부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⁷⁾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면세점 역할을 하는 다른 공제와는 달리, 최고한도 상향의 혜택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 중에서도 보다 부유한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6) 개정안별 배우자공제 상향 효과는 0p. 참조

7) 김영순,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 OECD 회원국 사례를 중심으로” 112p,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셋째,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안은 자녀 수에 따라 공제규모를 달리하여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가령, 한 자녀의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합산하여 7억원, 두 자녀의 경우 12억원, 네 자녀의 경우 22억원의 공제 효과가 발생함.

[참고: 2023년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⁸⁾]

구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가구 수	1,986,795	2,168,505	398,258	32,582	4,601
비율(%)	43.28	47.24	8.68	0.71	0.1

자료: 통계청

다만, 출산·양육 확대를 위한 다자녀 우대라는 정책 수단이 상속세를 부담하는 부유층에게만 적용되는 점, 일괄공제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과세당국에서 직권으로 공제⁹⁾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효율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는데, 자녀공제는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5억원 규모의 자녀공제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대체하는 면세점으로서 적합할 수 있으나, 현행의 유산세 과세방식 하에서는 자녀공제의

8) 집계대상은 만18세이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이며 자녀수(2자녀~5자녀이상)에는 함께 거주하는 만19세이상 자녀도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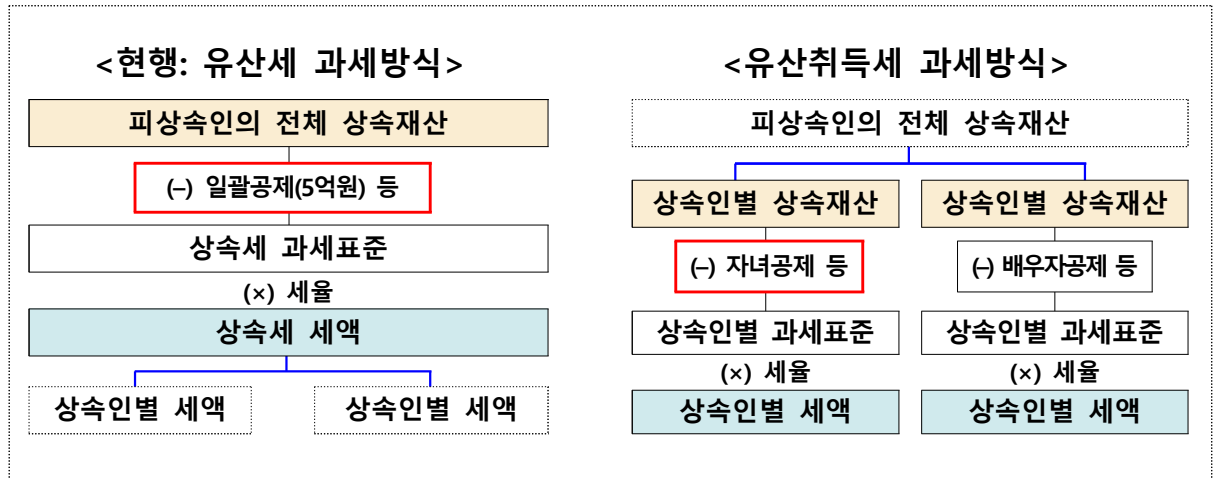
9)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동 적용되나, 기초공제+인적공제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있어야 하고 과세당국에서 각각의 인적공제 해당 여부, 인적공제액에 대한 계산 및 검증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효과가 해당 자녀에게 귀착되는 것을 담보하지 않으므로¹⁰⁾, 일괄공제보다 적합한 공제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비교]



끝으로, 공제금액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제금액 수준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인원 및 세수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10) 가령, 현행의 유산세 과세방식에서는 정부안에 따라 자녀공제 20억원(4명의 자녀를 가정)을 받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므로 각 자녀에게 각각 5억원의 공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각 자녀가 분할 받은 상속재산 분만큼 귀속됨.

[참고:개정안별 인적 공제금액 합계 시뮬레이션]

구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최소한도	자녀공제	일괄공제	인적 공제금액 합계		
					배우자有	배우자無	평 균
현행	2억원	5억원	5천만원	5억원	10억원	5억원	7.5억원
정부안(자녀1명)	2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12억원	7억원	9.5억원
안도걸의원안	2억원	7.5억원	5천만원	7.5억원	15억원	7.5억원	11.3억원
김은혜의원안	5억원	5억원	5천만원	10억원	15억원	10억원	12.5억원
임광현의원안	2억원	10억원	5천만원	8억원	18억원	8억원	13억원
정부안(자녀2명)	2억원	5억원	10억원	5억원	17억원	12억원	14.5억원
송언석의원안	2억원	10억원	5천만원	10억원	20억원	10억원	15억원
최은석의원안	2억원	20억원	5천만원	5억원	25억원	5억원	15억원
권성동의원안	2억원	12억원	5천만원	10억원	22억원	10억원	16억원
정부안(자녀3명)	2억원	5억원	15억원	5억원	22억원	17억원	19.5억원

*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미적용, 정부안 외에는 일괄공제 적용, 배우자공제는 최소공제액만 적용 가정. 전문위원실 작성

[참고:2023년도 총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피상속인 수]

구분	5억 원 이하	5억원- 10억원	10억원- 11억원	11억원- 12억원	12억원- 13억원	13억원- 14억원	14억원- 15억원	15억원- 20억원	20억원- 30억원	30억원 초과
피상속인 수	635	5,026	1,140	1,223	1,115	1,100	876	2,851	2,761	3,217
누계	635	5,661	6,801	8,024	9,139	10,239	11,115	13,966	16,727	19,944

자료: 국세청

2.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허용 범위 및 증여세액 공제 예외 사유 정비(김은혜의원안, 임광현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권성동의원안, 송언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상속공제 적용한도(제24조) ○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u>5억원</u>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차감함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가액)	☐ 공제 적용한도 적용 예외 사유 확대 ○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u>7.5억원(안도걸의원안), 8억원(임광현의원안), 10억원(김은혜의원안, 송언석의원안)</u>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차감함 1. ~ 3. (현행과 같음)
☐ 증여세액 공제(제28조) ○ 원칙: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예외: 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② 상속세 과세가액이 <u>5억원</u> 이하인 경우 미적용	☐ 증여세액 공제 예외 사유 확대 ○ (현행과 같음) ○ 예외: 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② 상속세 과세가액이 <u>7.5억원(안도걸의원안), 8억원(임광현의원안), 10억원(김은혜의원안, 송언석의원안)</u> 이하인 경우 미적용

* 김은혜의원안 2024. 7. 16. 발의(의안번호 1775), 임광현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99), 안도걸의원안 2024. 8. 23. 발의(의안번호 3143), 권성동의원안 2024. 9. 23. 발의(의안번호 4177), 송언석의원안 2024. 9. 24. 발의(의안번호 4210)

□ 5건의 개정안은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범위와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범위를 현행 5억원 이하에서 일괄공제금액 상향 수준에 맞추어 상향조정[7.5억원(안도걸의원안), 8억원(임광현의원안), 10억원(김은혜의원안, 권성동의원안, 송언석의원안)]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24조¹¹⁾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 유증한 가액이나,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공제한도 규정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속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뺀 가액) 세 가지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속공제가 피상속인과 밀접한 상속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사전에 증여하여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것임.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조 본문 단서규정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적용한도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를 사전증여하였더라도 일괄공제 금액 범위에서는 공제를 허용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 제24조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일괄공제금액 상향 정도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으로서, 일괄공제금액 확대(개정안 제21조)에 대한 심사결과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개정안 제28조는 제24조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증여세액 공제는 추가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마찬가지로 상속공제 허용 범위 확대 수준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물가연동제 도입(김은혜 의원안)

현 행	김은혜 의원안
☐ 상속세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5조) ○ 상속세 과세표준: $\text{상속세 과세가액} - \text{상속공제액} - \text{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물가상승률 반영 ○ 상속세 과세표준: $\frac{\text{상속세 과세가액} - \text{상속공제액}}{\times \text{물가조정계수}(60\% \sim 100\%)} - \text{감정평가 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5조) ○ 증여세 과세표준: $\text{증여세 과세가액} - \text{증여공제액} - \text{감정평가 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물가상승률 반영 ○ 증여세 과세표준: $\frac{\text{증여세 과세가액} - \text{증여공제액}}{\times \text{물가조정계수}(60\% \sim 100\%)} - \text{감정평가 수수료}$

* 김은혜의원안 2024. 7. 16. 발의(의안번호 1775)

☐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이 수시로 변화하는 물가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가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물적 상속공제금액과 감정평가수수를 제한 금액인 상속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고, 증여세¹²⁾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증여공제금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인 증여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됨.

12) 합산배제 증여재산 외의 일반 증여의 경우

□ 과세표준 계산 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법률의 개정 없이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점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물가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조세부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상속·증여세가 갖는 정책적 함의(含意) 등으로 개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표준별 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과세방식을 계산하는 경우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됨.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연혁]

1996년 이전		1997~1999년		2000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5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0.5억원~2.5억원	20%	1억원~5억원	20%	1억원~5억원	20%
2.5억원~5.5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5억원 초과	40%	10억원~50억원	40%	10억원~30억원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다만, 과세표준의 물가연동제 도입은 적정 조세부담 유지를 위한
입법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물가상승률 외에 다양한 조세
정책 결정요인은 감안하지 않은 자동조정 장치가 반드시 합목적적
인 정책수단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면이 있고,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부유한 일부의 상속인(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
인 중 6.8%)이 부담하는 세목인 상속·증여세에 물가연동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참고로,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와 연동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¹³⁾
이 우리위원회 계류 중에 있으므로 해당 안건의 논의 경과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

13) 박선원의원안 2024. 7. 11. 발의(의안번호 1637), 박범계의원안 2024. 8. 19. 발의(의안번호 2952)

4. 증여재산 공제 확대(김은혜의원안, 최은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공제(제53조) ○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u>6억원</u>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u>5천만원</u>(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u>2천만원</u>)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u>5천만원</u>	☐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향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u>12억원(김은혜의원안·최은석의원안)</u>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u>1억원</u>(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u>4천만원</u>) (김은혜의원안)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u>1억원</u> (김은혜의원안)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 ○ 혼인·출산·입양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공제할 수 있는 한도액 - 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u>1억원</u> - ② 출생일,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u>1억원</u> - ①, ② 합계액의 한도: <u>1억원</u>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향 ○ 혼인·출산·입양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공제할 수 있는 한도액 - 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u>2억원</u> (김은혜의원안) - ② 출생일,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u>2억원</u>(김은혜의원안) - ①, ② 합계액의 한도: <u>2억원</u>(김은혜의원안)

* 김은혜의원안 2024. 7. 16. 발의(의안번호 1775), 최은석의원안 2024. 8. 21. 발의(의안번호 3027)

☐ 2건의 개정안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과 혼인·출산 증여 공제 한도액을 상향하여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최은석의원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김은혜의원안은 최은석의원안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확대에 더하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¹⁴⁾.

거주자가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③ 직계비속, ④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친족 중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하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각각 ① 6억원, ② 5천만원, ③ 5천만원, ④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함.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개정연혁]

증여자	1999~2002	2003~2007	2008~2013	2014~2015	2016.1.1.~
배우자	5억 원	3억 원	6억 원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천 만 원(15백 만 원)			5천 만 원(2천 만 원)	
직계비속				3천 만 원	5천 만 원
기타친족				5백 만 원	1천 만 원

□ 또한, 2023년 12월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마련됨¹⁵⁾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5천만원)와는 별개로 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개정안은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은 2008년부터 6억원으로 유지되어 왔고,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은 2014년 이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직계비속과 기타친족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은 2016년부터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그간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가령,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200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81.7에서 2023년 111.6으로 약 37% 증가하여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감소해왔다고 볼 여지가 있음.

둘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을 상향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인정 및 생활보장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2023년 부부 간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구간이 증여건수 및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7%, 64%에 달하였음.

[2023년 배우자 간 증여 현황]

(명, 백만원)

구분	증여건수	증여건수 비중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비중
1억 이하	5	0.09%	376	0.01%
3억 이하	9	0.16%	1,907	0.04%
5억 이하	1	0.02%	404	0.01%
10억 이하	4,546	81.70%	3,240,757	64.02%
20억 이하	787	14.14%	996,257	19.68%
30억 이하	116	2.08%	282,830	5.59%

자료: 국세청

셋째, 부를 자녀세대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을 고려할 수 있는데, 만약 입법정책적으로 상속공제를 확대한다면 증여공제 수준도 상속공제 수준과 일정 균형을 맞추어야 혼인·출산·양육 등으로 자산이 보다 필요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원활해지고,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증여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 지원이라는 비판의 시각이 상속공제 확대보다 클 수 있음.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상속세는 납세자의 의사나 계획 없이 갑자기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증여세는 증여시점이나 규모를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부담이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높은 상속세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혹은 추후 증여재산

의 가치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富)를 미리 이전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둘째, 만약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상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물가상승률의 정도,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가령, 2008년 개정된 ‘배우자 공제한도’ 외에 ‘직계존속 공제한도’(2014년 개정),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한도’(2016년 개정), ‘혼인·출산증여 공제한도’(2024년 신설)까지 개정안과 같이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8	2014	2016	2020	2023
소비자 물가지수*	81.656	94.196	95.783	100	111.59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문 의 처
02)6788-5161